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18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안 제11조의2)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5. 11. 27.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추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1.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안 제11조의2)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제출 기한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보고 기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 -----3월----- ----- ----- ----- --.

현행법 제11조의2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결과인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연도 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이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¹⁾.

1) 최근 5년간 연도별 보고서 제출일 : '25.3.6, '24.3.28, '23.3.14, '22.3.21, '21.3.5

이에 개정안은 연간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로 조정함으로써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법적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 현실을 반영한 기한 연장으로 법적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간보고서 제출의 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언론중재위원회 또한 같은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관련 기관 의견**

○ 관련 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5.12.10.)	• 위원회의 조정사건 통계는 당해연도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은 처리결과가 차년까지 진행되어 기존 법정기한(2월) 내에 제출할 경우 불완전한 보고서가 작성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3월 중에 제출해 왔음 • 따라서 제출기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활동보고의 완결성을 갖추면서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방향에 동의